

창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60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6093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123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희망, 담당변호사 김지웅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변론 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3. 25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123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4. 14. 접수 제9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16. 접수 제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20.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4. 14. 접수 제9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4. 16. 접수 제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하단부터 제3쪽 상단에 있는 박스 안에 적힌 "피고"를 "C"으 로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내지 제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FI) 피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바 없고,피고가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2. 8. 30. 남편 J의 예금계좌에 있던 금전을 인출하여 C에게 54, 000, 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28. 50, 000, 000, 2013. 2. 14. 50, 000■원, 2013. 4. 18. 90, 000, 000원 합계 190, 000, 000원을 C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금원 합계 244,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판결등 참조) 예금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을 제1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서 피고의 C에 대한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판사 서민아판사 석동우